제 9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02월 06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검단4동 주민센터 담당자 : 김 찬용 문의전화 : 032-560-4617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조**	조** 1960-03-04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조**	최** 1963-04-21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조**	조** 1994-08-16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조**	조** 1991-01-21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조**	조** 1998-03-06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72-10-15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2018년 01월 26일

검단4동장 인